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도 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5
----------	------

발의연월일 : 2014. 3. 12.

발 의 자 : 이도형, 차준택 의원

(찬성자 6 인)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조금지원, 주거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함(안 제5조)
- 마.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 관련자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 사.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 별첨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

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피해자지원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위촉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표창)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p>관계법령</p>	<p><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자 보호법</p> <p><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사항 없음”</p>
<p>특이사항</p>	<p>“해당사항 없음”</p>

관련법령 발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

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과 지원법인등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에 대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